휘 보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3대 원장 취임

■ 2024년 3월 1일 제13대 원장으로 허은 교수님(한국사학과) 취임

▌『민족문화연구』 제11회 우수논문상 시상식

■ 일시: 2024년 5월 23일(목) 9시 30분
■ 장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B203(지훈회의실)
■ 내용: 『민족문화연구』에 1년간(제99호-제102호) 게재된 논문 가운데 비전임 연구자의 우수논문 한 편을 선정하여 시상
■ 수상자: 전상욱(아주대)
■ 수상논문: 「가와이문고(河合文庫) 소장 『春川邑事例』를 통해서 본 19세기 춘천의 재정 운영」(『민족문화연구』 101호 게재)
■ 상금: 일백만 원

▌포니정아카이브 연구 국제학술대회

■ 기간: 2024년 5월 23일(목)~24일(금)
■ 장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B203(지훈회의실)
■ 주제: 글로벌시대 자동차산업과 현대자동차 '포니'
■ 주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후원: 포니정 재단

『민족문화연구』 간행 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민족문화연구』 간행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하 '민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민족문화연구』의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간행물 성격) 『민족문화연구』는 동아시아 및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학 전문학술지로서 관련 분야의 논문 및 기타 학술성과물을 싣는다.

제4조 (간행 형태 및 시기)

① 『민족문화연구』는 민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 형태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민족문화연구』는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네 차례에 걸쳐 간행한다.

제5조 (게재 논문 저작권) 『민족문화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민연이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단, 게재된 논문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연은 이를 승인한다.

제6조 (투고 자격 및 방법)

① 한국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의 자격 소지자가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동일인의 연속 게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상시 투고할 수 있다. 투고 방법은 "『민족문화연구』 투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투고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투고한다.

제7조 (심사 대상 및 방법)

① 상시 투고된 원고 중에서 원칙적으로 각 호의 발간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 투고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② 심사 방법은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4장. 투고

논문의 심사"에 명시되어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논문 심사를 진행한다.

제8조 (연구 윤리) 『민족문화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관한 연구 윤리는 "민족문화연구원 연구 윤리 규정"에 따른다. 논문 투고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간행물 열람 및 배포) 『민족문화연구』는 전자책 형태로 간행되며 민연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회원이면 누구나 수록 논문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민연 및 관련 연구 기관의 보관용, 그리고 저자 배포용으로 소량의 학술지를 인쇄 배포한다. 논문 저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저자에게 논문 별쇄본을 함께 배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민족문화연구』 제33호의 간행(2000. 12. 31)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규정은 『민족문화연구』 제48호의 간행(2008. 6. 30)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규정은 『민족문화연구』 제53호의 간행(2010. 12. 31)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규정은 『민족문화연구』 제58호의 간행(2013. 2. 28)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규정은 『민족문화연구』 제63호의 간행(2014. 5. 31)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규정은 『민족문화연구』 제67호의 간행(2015. 5. 31)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규정은 『민족문화연구』 제102호의 간행(2024. 2. 28)부터 적용한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업무와 활동 및 투고 논문 심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 조직 및 권한

제3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10인 이상, 편집간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촉)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상호 추천과 과반 이상의 동의에 의해, 민족문화연구원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한국학 분야 관련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국내외 학술 활동이 활발한 자로 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민족문화연구원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의 추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1. 본 학술지의 학술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자로, 해당 분야의 학문적 성과가 높고 학술 활동이 활발하여야 한다.
2. 지역별 균형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의 소속기관이 국내외 6개 이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야 한다.
3.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대학 소속 교원이 편집위원 총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편집간사는 박사급 이상의 전문 인력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민족문화연구원장이 임명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를 도와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권한)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6조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업무와 활동

제7조 (업무)

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기획, 심사,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규정과 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 및 심사 규정을 정하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④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우수 연구자들의 학술지 투고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우수 논문의 심의 및 선정을 주관한다.

제8조 (소집) 편집위원회는 연 4회 이상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며, 편집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성립)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궐석한 경우에는 소집된 편집위원의 합의에 의해 선출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편집위원 중 제반 안건에 대한 의사를 위임한 경우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10조 (의결)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투고 논문의 심사

제11조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여야 한다. 박사학위자 이상의 전공자, 또는 학예연구원 등의 유관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분야 전공자의 섭외가 어려울

경우 인접 분야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또한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소속기관이나 최종학위 수여기관, 또는 수학기관이 겹치지 않는 인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투고자가 "『민족문화연구』 투고 규정"에 의거하여 요청한 '상피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요청 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인물의 심사위원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⑤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으로 한다.

제12조 (익명성과 비밀 유지에 관한 의무)

①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하에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② 익명성과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그 징계를 의결하여 시행한다.

③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궐석시킨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사 절차)

① 심사는 1차, 2차, 3차 심사로 진행한다.

②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투고 논문의 제반 요건을 검토한다. 투고 논문이 본 학술지의 성격에 맞고 제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2차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전체 논문투고건(국외 포함) 중 특정 기관(학교)의 논문투고건 비율이 1/3을 초과하게 될 경우, 논문 투고 순서에 따라 다음 호로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③ 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투고 논문의 '게재', '수정 후 게재', '재심', '게재 불가'를 최종 결정한다.

⑥ 심사 결과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⑦ ‘게재’ 및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서를 수령한 후 소정 기일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한다.

⑧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 중 수정 요구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거나 해명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를 최종 결정한다.

⑨ 심사 결과 ‘재심’ 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⑩ 3차 심사는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1인을 위촉하여 진행하되, 심사결과는 ‘게재’와 ‘게재 불가’로만 판정한다. 단, 3차 심사는 발간 일정을 감안하여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까지(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최대 90일) 투고자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확정한다.

제14조 (심사 기준)

① 심사 결과는 항목별 평가(심사소견), 종합 평가(게재여부), 심사총평(심사내용)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② 항목별 평가는 다음 5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각각의 기준마다 상・중・하 세 등급으로 평가한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 논문의 주제가 해당 학문 분야의 연구주제로 적합한가?
2.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의 연구방법이 타당하고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가?
3. 연구내용의 독창성: 논문이 참신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
4. 논리전개의 객관성: 논문의 자료는 적절하며 논리전개의 과정이 엄밀하고 객관적인가?
5. 학계 기여도: 연구결과의 파급효과와 활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③ 종합 평가는 ‘게재’, ‘수정 후 게재’,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한다.

④ 심사 총평은 항목별 평가와 종합 평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수정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① 게재 여부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진다.

②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은 3인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 판정
○	○	○	게재
○	○	△	
○	△	△	수정 후 게재
△	△	△	
○	○	X	
○	△	X	재심
○	X	X	게재 불가
△	△	X	
X	X	X	
○	X	X	

○ : 게재 / △ : 수정 후 게재 / X : 게재 불가

③ 기타 자세한 심사 절차와 방법은 제14조의 심사 절차와 제15조의 심사기준을 따른다.

제16조 (이의 신청)

① 투고자는 심사 내용과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그 사유를 담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5월 31일에 개정된『민족문화연구』간행 규정(제5차 개정)의 일부와 심사 규정(제4차 개정)을 종합하여 편집위원회 규정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본 규정은『민족문화연구』제67호의 간행(2015. 5. 31)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은『민족문화연구』제76호의 간행(2017. 8. 31)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제2항 개정)

이 개정규정은『민족문화연구』제83호의 간행(2019. 5. 31)부터 적용한다. (제2조 조문 변경, 제3조 조문 신설 및 1・2・3항 삭제, 제4조 조문 삭제 및 1・2・3항 내용 변경, 제5조 삭제 및 개정, 제5조 이하 제16조까지 번호 변경, 제6조 조문 변경, 제3장 제목 변경, 제8조 조문 변경, 제9조 조문 변경, 제13조 10항 개정, 제15조 2항 변경)

이 개정규정은『민족문화연구』제95호의 간행(2022. 5. 31)부터 적용한다. (제13조 4항 개정, 제15조 2항 개정)

이 개정규정은『민족문화연구』제102호의 간행(2024. 2. 28)부터 적용한다. (제11조 2・3・4・5항 개정, 제13조 8항 개정, 제16조 3항 개정)

『민족문화연구』 투고 규정

1. 원고의 작성・제출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가. 원고는 한컴오피스 한글, MS 워드 등 널리 통용되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파일 형태로 제출하되, 심사 진행을 위해 편집자가 저자의 신분 표시를 제거할 수 있도록 편집/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도판 등을 파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복사・인쇄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나. 원고 분량은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기준 170매 이내, 서평은 80매 이내, 기타 원고는 1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다. 연구 논문의 경우 900자(띄어쓰기 포함) 이내의 국문 초록과 400단어 이내의 영문 초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참고문헌 및 주제어를 반드시 명기한다. 기타 원고는 국문・영문 제목과 필자명을 함께 제출한다.

라. 저자 표시 사항에는 저자의 성명과 소속 학교, 학과, 직위를 표시한다. 저자의 학위논문 전체 혹은 일부(장/절)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사항을 표시한다.

마.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역할 비중에 따라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 연구자' 순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그 역할을 명시한다.

바. '라' 항의 저자 표시 사항 이외에는, 투고논문 파일의 본문이나 각주, 참고문헌 등에 저자의 신분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예시 ㉠, ㉡ 참고]이 없어야 한다.

【예 시】

㉠ 본문에 "필자가 2013년 선행연구에서 검토한바 (…)", "A대학 B학과에서 3년 동안 C 수업을 진행한 경험으로는 (…)" 등과 같이, 저자의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 각주나 참고문헌 등에 "졸고", "졸저", "OOO", "　　" 등 심사자가 식별 가능한 표기를 사용해 저자 자신의 논저를 타 연구자의 논저와 다르게 표기한 경우.

사. 저자는 논문의 학술적 가치 및 논리적 정연성 등과 무관한 사유로 공정한 심사를 받지 못할 심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소정의 양식과 절차에 따라 지정한 '상피 심사위원'의 심사위원 위촉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아. 복수의 저자 사이에, 혹은 논문의 집필・심사・게재 등과 관련된 기타 인물과

저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거나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을 경우, 저자는 해당 사안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원고의 표시법은 다음을 따른다.

가.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2017.3.28.)]을 따르며, 추후 한글 맞춤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을 따른다.

나. 章은 '1・2・3', 節은 '1)・2)・3)', 項은 '(1)・(2)・(3)'의 형식으로 분류・표시한다.

다. 인용문의 처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절 단위 이상의 인용문은 큰따옴표(“ ”) 속에 쓴다.

② 본문에서 분리하여 따로 문단으로 구성한 인용문은 큰따옴표를 쓰지 않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작게 하고 좌우로 들여쓰기를 한다.

③ 구 단위 이하의 인용문・강조문은 작은따옴표(‘ ’) 속에 쓴다.

④ 생략을 표시하는 줄임표는 '(…)' 형태로 표시한다.

⑤ 원문에 없는 말을 인용자가 첨가할 경우 대괄호'[ ]'를 쓴다.

라. 각주에서 출전 표시는 '저자, 서명, 출판사항, 인용 페이지' 순으로 표기하되, 세부사항은 다음의 형식에 따른다.

① 저자: 저자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기 고유한 표기 순서대로 적고, 뒤에 쉼표(,)를 찍는다. 저자가 여럿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나열하되, 동양인의 경우 이름 사이에 '가운데점(・)'을 찍어 구분하고, 서양인의 경우 2인일 때는 '_____ and _____', 3인일 때는 '_____, _____ and _____'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4인 이상일 경우 맨 처음의 저자명만 적되, 동양인명에는 '외'를 서양인명에는 'et al.'을 쓴다.

② 서명: 동양서의 경우 겹낫표(『』: 자판문자)를 쓰며, 서양서의 경우 이탤릭체로 쓴다. 동양서 고전의 경우는 '편명, 서명'의 순서로 적되, 편명은 낫표(「」), 서명은 겹낫표(『』)를 쓴다. 〈예문 ㉥, ㉦, ㉧〉

③ 논문・기사: 동양서의 경우 낫표(「」: 자판문자), 서양서의 경우 큰따옴표(“ ”)로 표시한 뒤 쉼표(,)를 찍어 구분한다. 〈예문 ㉤, ㉭〉

④ 출판사항: 출판사항은 '출판지: 출판사, 출판 연도' 형식으로 쓰되, 국내의 경우 출판지는 생략할 수 있다. 〈예문 ㉠, ㉣-㉥〉

⑤ 인용 페이지: 동양서의 경우 출판사항 다음에 쉼표를 찍고 한 페이지일

경우 '112면.', 두 페이지 이상일 경우 '112-114면.'의 형식으로 표시하며, 서양서의 경우 'p.'로 표기하되, 페이지 수가 복수일 경우 'pp.'로 표시한다. 〈예문 ㉠-㉥, ㉱〉

⑥ 거듭 쓰인 문헌의 註: 앞의 註에서 다루어진 문헌을 다시 언급할 때는 '저자명, 앞의 책/글(서양서의 경우 Op. cit.)'의 형식으로 쓴다. 동일 저자의 논저를 여러 편 인용할 경우, 인용 논저 간 구분이 용이하도록 발행 연도를 부기한다. 동일한 문헌을 언급한 註가 연이어 쓰일 경우 저자명을 생략하고 '같은 책/글(서양서의 경우 Ibid.)'이라고 쓴다. 〈예문 ㉡, ㉢, ㉦, ㉧, ㉬〉

⑦ 편저에서 편자보다 원저자를 드러내고자 할 경우에는 '원저자명, 논문명, 서명, 편자, 출판사항' 형식으로 쓴다. 〈예문 ㉪〉

⑧ 연속 간행물의 출전 표시는 '저자, 논문명, 간행물명, 발행처, 발행시기' 순으로 하되 단행본에 준하여 쓴다. 잡지 혹은 신문과 같이 발행시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경우에는 연월(일)로 표기를 할 수 있다. 〈예문 ㉱, ㉲〉

⑨ 두 개 이상의 출전이 있을 경우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되, 동일 저자의 경우에는 맨 앞에만 저자 이름을 표기한다. 〈예문 ㉬〉

⑩ 인터넷 자료의 출전 표시는 '작성자(있을 경우), 자료명, 웹사이트명, 작성일, 웹사이트 주소(검색일)' 순으로 쓴다. 〈예문 ㉮〉

【예 문】

㉠ 윤사순, 『조선시대 성리학의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8, 292면.

㉡ 윤사순, 앞의 책, 294면.

㉢ 같은 책, 294면.

㉣ Herbert Marcuse 저, 金仁煥 譯, 『에로스와 문명』, 서울: 나남, 1989.

㉪ 송기호, 「皇帝 칭호와 관련된 발해 사료들」, 『渤海史의 綜合的 考察』, 한규철 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0, 206면.

㉫ Donald Lach, *Asia in the Making of Euro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p.120.

㉦ Donald Lach, Op. cit, pp.122-123.

㉧ Ibid., pp.122-123.

㉭ 「享先農儀」, 『國朝五禮儀』 卷2 吉禮.

㉮ 丁若鏞, 「中庸講義補」, 『與猶堂全書』 卷4. "上天下天水火土石日月星辰, 猶在萬物之列, 況可以銅鐵草木, 進之爲萬物之母乎?"

㉦ 이성일, 「우리 고전 번역의 필요성」, 『민족문화연구』 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8, 316-317면.

㉧ Richard Hofstadter, "Abraham Lincoln and the Self-made Myth", *In The American Political Tradition and the Men Who Made It*, New York: Alfred A. Knopf, 1948, p.36.

㉨ 윤사순, 『조선시대 성리학의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8, 292면; 『조선, 도덕의 성찰: 조선 시대 유학의 도덕철학』, 돌베개, 2010, 16-31면; 이성일, 「우리 고전 번역의 필요성」, 『민족문화연구』 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8, 316-317면; 홍일식, 앞의 책, 2005b, 23면.

㉩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연합뉴스, 2017.6.26.,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626213100005&input=1196m (2018.4.3. 검색).

마. 참고문헌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①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문헌은 원전 자료, 연구 논저의 순으로 배치하고, 연구 논저는 한국어 문헌, 기타 동양어 문헌, 서양 문헌의 순으로 배치하되, 배열 순서는 동양 문헌은 저자명 가나다순(동일 저자의 논저는 발행일순)으로, 서양 문헌은 저자명 알파벳순(동일저자의 논저는 발행일순)으로 한다.

③ 원전 자료는 저자 및 편자의 이름(저자 및 편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서명, 출판사, 출판 연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문 ㉠, ㉡〉

④ 연구 논저는 저자 및 편자의 이름(여러 명일 경우 각주의 저자 표기 방식을 따름), 역자의 이름(여러 명일 경우 각주의 저자 표기 방식을 따름. 번역서에만 표기), 논문 제목(단행본의 경우 생략), 서명, 출판사, 출판 연도(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저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 표기)의 순으로 표기하되, 페이지는 표시하지 않는다. 〈예문 ㉢-㉥〉

⑤ 출판 예정인 논저는 출판 연도 대신 '출판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⑥ 미간행 저술은 위의 연구 논저의 예에 준하되 발표된 기관 및 발표집명, 발표 날짜를 기재한다. 〈예문 ㉪〉

⑦ 서양 논저의 경우에는 각주 표기 방식에 의거하되 저자명의 경우 성(姓: Family name) 뒤에 쉼표(,)를 찍고 이름을 적는다. 〈예문 ㉨, ㉦〉

⑧ 인터넷 자료의 경우에는 작성자(있을 경우), 자료명, 웹사이트명, 작성일,

웹사이트 주소(검색일) 순으로 표기한다. 〈예문 ㉤〉

【예 문】

㉠ 丁若鏞, 『與猶堂全書』, 경인문화사, 1987.
㉡ 『國朝人物考』, 서울대 출판부 영인본, 1992.
㉢ 고주몽, 『서명』, 고려출판사, 1998.
㉣ 고주몽 편, 『편서명』, 고려출판사, 1998.
㉥ Herbert Marcuse 저, 金仁煥 譯, 『에로스와 문명』, 서울: 나남, 1989.
㉦ 고주몽, 「논문 제목」, 『서명』, 고려출판사, 2000.
㉧ 고주몽, 「논문 제목」, 『민족문화연구』 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1a.
㉨ 고주몽, 「논문 제목」, 『민족문화연구』 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1b.
㉩ 고주몽, 「논문 제목」, 한국인문학회 제156차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2002.4.5.-6.
㉪ James, Palais, *Politics and Policy in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 Henderson, Gregory, "Chong Ta-san, A Study on Korea's Intellectual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Vol.XVI, No.3, 1957, pp.15-29.
㉤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연합뉴스, 2017.6.26.,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626213100005&input=1196m(2018.4.3. 검색).

바. 문단 단위로 한문 원문을 인용할 경우, 본문에는 인용문의 형식에 맞게 번역문을 쓰고, 각주에는 해당 번역문에 대한 한문 원문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기본적인 구두점(쉼표・마침표・물음표・느낌표・따옴표)을 표시한다.

사. 한시의 인용은 번역문을 상단에, 원문은 하단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한자 표기가 필요한 단어는 한자 노출〈예문 ㉠〉 형태로,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경우 한글(한자)〈예문 ㉡〉 형태로 표기하되, 논문 안에서 일관성 있게 표기한다.

【예 문】

㉠ 이는 『詩經』「大雅」의 "衰職有闕 維仲山甫補之"라는 대목에서 온 것이다.
㉡ 이정구(李廷龜)는 조선 중기 한문 사대가의 한 사람이다.

자.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저 저술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민족문화연구』제67호의 간행(2015.5.31.)부터 시행한다.
(기존의 '논문 투고 요령'을 '투고규정'으로 준용하여 시행)
이 개정 규정은『민족문화연구』제97호의 간행(2022.11.30.)부터 시행한다.
(2조 '아' 항 신설, 기존의 2조 '아' 항을 '자' 항으로 이동, 이전 시행 시 누락된 부칙을 신설)
이 개정 규정은『민족문화연구』제102호의 간행(2024.2.28.)부터 시행한다.
(1조 '가'항 개정, 1조 '바' 항 신설, 2조 '가' 항 개정, 2조 '라'·'마'·'바'·'사' 항 개정)

민족문화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민족문화연구』 연구윤리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민족문화연구』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하 '민연') 발행 학술지 『민족문화연구』의 논문투고자 및 게재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중복투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⑥ '중복투고'는 투고한 논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심사 종료 이전에 타 학회 혹은 기관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⑦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비윤리적 연구행위의 범위) 다음의 행위는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한다.

①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키는 행위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키는 행위

③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어야 할 연구결과를 여러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관련 분야 전공자에게 민연 원장이 위임하되,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후 호선하도록 한다.

④ 제보자 및 피제소자와 특수관계이거나,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거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은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7조 (심의요청)

① 개인이나 대학부서, 학술단체 등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민족문화연구』 논문투고자 및 게재자의 특정 행위가 연구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 1항에 따른 심의가 요청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 개최일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조사절차와 심의결과 등)

①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의 심의요청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절차에서 피제소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 피제소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제보자에게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1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하며, 피제소자에 대해 서면으로 권고, 시정요구, 중재, 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① 위원회의 조사과정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②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경우에도 같다.

제11조 (제보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 보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보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상충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보자와 피제소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윤리 관련 제재 조치

제12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해당 논문은 게재(투고) 취소 및 삭제한다.

②『민족문화연구』에 논문 투고 금지

1. '표절'의 경우, 영구히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2. '위조', '변조',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의 경우, 5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3.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의 경우, 3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③ 연구부정행위로 확정되면 민연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 확정 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공시한다.

④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진 후 30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 또는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3조 (허위제보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고의로 허위제보를 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5년간『민족문화연구』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② 민연 홈페이지 및 허위제보행위가 밝혀진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허위제보행위 사실을 공시한다.

③ 허위제보행위가 밝혀진 후 30일 이내에 허위제보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허위제보행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4장 세부 시행지침

제14조 (연구윤리 규정 게시 및 홍보) 민족문화연구원 홈페이지에 "민족문화연구 연구윤리 규정"을 게시하여 누구든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며, 논문 모집・심사・게재 등의 과정에서 투고자 및 저자에게 "민족문화연구 연구윤리 규정"을 홍보하여 연구윤리의 확산과 준수를 도모한다.

제15조 (특수관계 및 이해상충 유무 점검)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논문의 투고・심사・게재 등과 관련하여 특수관계 및 이해상충 유무를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편집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관련 사안이 발생하여 연구윤리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특수관계 및 이해상충 유무에 대한 투고자의 보고 여부 및 세부 내용을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한다.

제16조 (연구윤리 자기 점검)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온라인 투고 시에 투고논문이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연구윤리 및 저작권에 관한 자기 점검[체크리스트]"의 항목을 통해 사전에 자기 점검해야 한다.

제17조 (논문표절방지시스템 활용) 편집간사는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투고 논문의 표절 여부가 의심되는 논문에 한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 검사'를 통해 논문표절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및 검토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4장 제16조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1장 제4조 6항 신설)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정 명칭 최신화에 따른 제1장 제1조・제2조・제3조 개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449호, 2023.7.17.)'에 따른 제4조 개정, 제6조 4항 개정, 제12조 2항 개정, 기존 제14조 삭제(제12조 2항에 편입), 기존 제15조를 개정 및 제14조로 이동, 제15조 신설, 제17조 개정]

『민족문화연구』 제103호 논문심사 경위 및 게재율

『민족문화연구』 제103호에 모집된 신규 투고논문은 19편이며, 재심사 대상 논문도 1편 접수되었다. 심사 경위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에서는 1차 편집위원회 회의(2024년 4월 15일)를 통해 투고 규정·내규 등을 토대로 투고논문의 제반 요건을 검토하고 접수 여부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19편의 심사대상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공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지난 제102호에서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 1편에 대해서는 전공자 1인을 재심 심사위원으로 섭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신규논문 19편과 재심논문 1편, 총 20편의 심사위원이 섭외 및 위촉되었다.

2차 편집위원회 회의(2024년 5월 20일)에서는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 및 심사규정 제15조(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2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하였다. 그 결과 심사대상 신규 논문 19편 가운데 7편은 '게재', 5편은 '수정 후 게재', 2편은 '재심', 5편은 '게재불가'로 판정받았다. 지난 102호의 '재심' 논문 1편은 재심사 끝에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받았다. 심사결과 및 심사의견은 모든 투고자에게 전자메일로 통보하였다.

3차 편집위원회 회의(2024년 5월 27일)에서는 심사규정 제13조(심사 절차) 8항에 따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 5편의 게재 여부를 두고,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의 적절성 및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5편의 '게재'를 최종 결정하고, 모든 심사결과와 심사의견을 투고자에게 전자메일로 통보하였다.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 2편의 경우 다음 호에서 재심을 받겠다는 투고자의 의향을 확인하여 재심 일정 및 관련 사항을 전자메일로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번 호에 최종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총 12편이며, 게재율은 63.1%(12편/19편)이다.